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158

발의연월일: 2021. 2. 17.

발 의 자: 박완주·서영교·진선미

홍성국 • 이규민 • 고용진

이학영 · 임호선 · 이타희

김홍걸 · 이정문 의원

(119]

제안이유

2020. 7. 2.부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업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가맹점 등록을 하도록 의무화되었음. 이로 인해 가맹점등록과 관련한 업체의 불편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부담이 발생하고있어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이 없어도 등록 신청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가맹점 등록절차를 완화하려는 것임.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가맹점 관리를 위해 가맹점 제한 대상을 세분화하여 업종과 개별 사업체를 구분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부정행위 등을 이유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가맹점으로 재등록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가맹점 현황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관련정보의 공개 의무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아울러, 전국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지역사랑상품

권 사업의 안정성과 향후 지속가능성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원의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가맹점 등록 신청에 대한 간주 규정을 신설함(안 제7조제1항 단서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이 없어도 가맹점 등록 신청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도록 규정함.

나. 가맹점 등록 제한 대상의 판단기준을 업종 또는 사업체로 세분화 함(안 제7조제2항).

가맹점 등록 제한을 업종 외에도 개별 사업체에 대해 할 수 있도록 그 판단기준을 종전의 업종에서 업종 또는 개별 사업체로 세분화함.

다. 지방자치단체의 가맹점 적합 여부 판단을 의무 규정으로 신설함 (안 제7조제3항 후단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맹점 등록 신청에 대해 적합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함.

라. 가맹점 현황을 공개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7조제4 항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기별로 가맹점 등록 현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규정함.

마. 부정유통 등에 의한 가맹점 등록 취소 시 해당 가맹점의 재등록을 방지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8조제2항 신설).

거짓 등록, 제한업종 영위, 상품권 부정유통 등의 사유로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을 일정기간 동안 가맹점으로 재등록할 수 없도록 제한함.

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구체화함(안 제15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필요한 행정적·재 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함.

사. 가맹점에 관한 경과조치 기한을 연장함(안 부칙 제4조제2항).

가맹점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 또는 가맹점 업무를 수행하고자하는 자가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가맹점 등록 없이 가맹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가맹점 등록에 관한 기한을 연장함.

법률 제 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가맹점"을 "제4조제3항의 유통지역 내에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업종으로서"를 "업종 또는 사업체로서"로, "제한업종을"을 "제한업종 또는 등록 제한사업체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를 "등록 신청을 한 자가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여"로,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를 "결정하여야"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맹점을 하고 자 하는 자의 신청이 없어도 등록 신청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맹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 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기별로 가맹점 등록 현황을 해당 지방자

치단체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 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가 일정기 간 동안 가맹점으로 재등록할 수 없도록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지원"을 "행정적·재정적 지원"으로 한다.

법률 제17252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2항 중 "자는"을 "자 및 이 법 시행 이후 가맹점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으로, "3개월"을 "2021년 12월 31일"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혂 행 개 정 안 제7조(가맹점의 등록) ① 제4조 제7조(가맹점의 등록) ① 가맹점 제3항의 유통지역 내에서 지역 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 사랑상품권 가맹점-----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 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 다만, 지방자치단체 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이 없어도 등록 신청을 받 은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맹점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이 법의 목적에 적합하지 아 -- 업종 또는 사업체로서---니한 업종으로서 지방자치단 체의 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 제 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한업종 또는 등록 제한사업체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맹점 (3) ----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등록 신청을 한 자가 지역사랑 상품권 가맹점으로 적합한지 여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부를 판단하여 --- 결정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신 설>

④ (생 략)

제8조(가맹점 등록의 취소) ① (생 략)

<신 설>

② (생 략)

제15조(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지 제15조(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지 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판매・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맹점 등록 여부를 결정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 려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기별 로 가맹점 등록 현황을 해당 지 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 다.
- (5) (현행 제4항과 같음)
- 제8조(가맹점 등록의 취소) ① (현 행과 같음)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가 일 정기간 동안 가맹점으로 재등록 할 수 없도록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위) ① -----행정적 • 재정적 지원-----.

②·③ (생 략)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판매대행점 및 가맹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생 략)
② 이 법 시행 당시 지방자치단
체의 조례에 따라 가맹점의 업
무를 수행하고 있는 <u>자는</u> 이 법
시행일부터 <u>3개월</u>까지는 제7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
하고 가맹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법률 제17252호 지역사랑상품권

② · ③ (현행과 같음)

| 법률 제17252호 지역사랑상품권 |
|----------------------|
|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부칙 |
| 제4조(판매대행점 및 가맹점에 관 |
| 한 경과조치) ① (현행과 같음) |
| ② |
| <u>자 및 이 법</u> |
| 시행 이후 가맹점 업무를 수행 |
| 하고자 하는 자는 |
| <u>2021년 12월 31일</u> |
| |
| |